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60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태선·김태년·장철민

채현일 • 윤종군 • 권칠승

조인철 · 정준호 · 김영배

김주영 • 이훈기 • 추미애

최기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및 비용 절감 등 운영·관리 효율 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
립권자 등) ①・② (생 략)	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	③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의2.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
	지 및 비용 절감 등 운영ㆍ
	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
	술의 고도화 및 평가·지원
	<u>에 관한 사항</u>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